

,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복송 북한선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일시 : 2019. 12. 4.(수) 10: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 한변은 지난 11월 11일 아래 이유로 강제 복송된 북한선원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2. 정부는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을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으므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복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전혀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1995. 2. 8.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유엔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로 규탄받고 있고, 실제 탈북하다 잡힌 주민들을 고문하고 즉결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는 위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하였다.
4. 한변은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유근 안보실 1차장, JSA 대대장 임모 중령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등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5. 이에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들을 조사했던 합동심문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북한 당국 및 국제사회에 신속히 교섭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구금의 중지,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채명성